

평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2년 5월 15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4월 23일 평창군수(강석주의원의외 3인)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5월 14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2002년 5월 14일 평창군의회(임사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2년 5월14일)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우강호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2002. 1.4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(대통령령 제17484호)되어 국내여비중 숙박비가 일부 인상됨에 따라
- 평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도 공무원여비 규정과 같이 현실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의장·부의장의 숙박료(1야당) 지급기준 "41,000원"을 "46,000원"으로 하여 "5,000원"을 인상.
- 의원의 숙박료(1야당) 지급기준 "22,000원"을 "25,000원"으로 하여 "3,000"원을 인상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면서 국내여비

중 숙박비의 지급단가가 인상되었음.

- 따라서 평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도 공무원 여비규정과 같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